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OCIO연금슬루션기본형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- 변경 사항: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②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 ③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 (증권대여위험, 증권차입위험)
 ④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

□ 효력발생일 : 2022. 9. 1.

□ 변경 내용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2022. 3. 31 기준	2022. 7. 29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2022. 4. 30 기준	2022. 7. 31 기준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업데이트	<신 설>	2022. 5. 30 : 투자신탁 최초설정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[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	모투자신탁의 연혁 업데이트	-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<신 설> -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	-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2022. 6. 3 : 투자신탁 최초설정 2022. 6. 30 :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-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		<p>〈신 설〉</p> <p>-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</p> <p>〈신 설〉</p> <p>-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〈신 설〉</p>	<p>2022. 6. 30 : 자투자신탁 추가 <u>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 <u>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 <u>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</p> <p>-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</p> <p>2022.06.30 : 자투자신탁 추가 <u>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 <u>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 <u>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</p> <p>-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2022.6.3 : 투자신탁 최초 설정 2022.6.30 : 자투자신탁 추가 <u>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 <u>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 <u>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 <u>트러스톤 TIF 안정형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</p>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2022. 4. 30 기준	2022. 7. 31 기준



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가. 투자 대상</p> 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(3) 트러스톤 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</p> <p>4) 자산유동화 증권 : (생략)</p> <p>▶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신용평가등급 A0 이상)</u></p> <p>(생략)</p> <p>(4) 트러스톤 멀티에셋인컴 증권모투자신탁 [혼합-재간접형]</p> <p>4) 자산유동화 증권 : (생략)</p> <p>▶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신용평가등급 A0 이상)</u></p> <p>(생략)</p>	<p>(3) 트러스톤 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</p> <p>4) 자산유동화 증권 : (생략)</p> <p>▶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신용평가등급 A0 이상)</u></p> <p>(생략)</p> <p>(4) 트러스톤 멀티에셋인컴 증권모투자신탁 [혼합-재간접형]</p> <p>4) 자산유동화 증권 : (생략)</p> <p>▶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신용평가등급 A0 이상)</u></p> <p>(생략)</p>
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나. 투자제한</p> 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(3) 트러스톤 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</p> <p>3) 동일종목 투자</p> <p>가) (생략)</p> <p>나) (생략)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략)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</u></p>	<p>(3) 트러스톤 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</p> <p>3) 동일종목 투자</p> <p>가) (생략)</p> <p>나) (생략)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략)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(한</u></p>

		<p>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</p> <p>(4)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3) 동일종목 투자 가)(생략) 나)(생략) (1)(생략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략)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</p>	<p>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</p> <p>(4)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3) 동일종목 투자 가)(생략) 나)(생략) (1)(생략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략)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</p>
--	--	--	---

		당증권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	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	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	<신 설>	<p><u>증권대여위험</u> :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,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증권차입위험</u> :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, 차입 자산을 공매도(short selling)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,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(매도가-매수가)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</p>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</p>	<p><u>2022. 3. 31 기준</u></p> <p>주 3)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(신 설)</p>	<p><u>2022. 6. 30 기준</u></p> <p>주 3)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u>이 투자신탁은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.</u> <u>*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: 주식·채권·수익증권·파생상품·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(단,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)</u> 주 6)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금융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	---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 라. 운용자산 규모</p>	<p>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	<p><u>2022. 4. 30 기준</u></p>	<p><u>2022. 7. 31 기준</u></p>
<p>3.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(1) 주요업무 (생략)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</p>	<p>(1) 주요업무 (생략)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</u></p>



		인업무	<u>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
--	--	-----	---